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20.3.31.)하여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만 있던 것을 위반 정도에 따라 취소를 하는 대신에 계속종사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현장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이달의 기능한국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숙련기술의 수준 향상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개정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인 대한민국명장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에 관한 처분 기준 등에 대하여 법 개정 내용의 이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명장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을 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한민국 명장 자격을 취소하는 등 단계별로 처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제13조제

4항 및 제5항 개정, 제13조제6항 신설, 제21조제5항 개정).

나. 숙련기술전수자 등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자 함(안 제15조제2항 개정).

다.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대상,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라. 숙련기술전수활동에 대한 평가 대상,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마. 공단에 대한 업무위탁 사항에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숙련
기술 장려활동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3
조 개정).

바.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업무에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업무를 신설하고, 관계 기관에 자료요청 근
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34조 개정, 34조의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진의 제3항) 중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법 제12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중단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및 제20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하나를 졸업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자
3. 기타 숙련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 공헌 실적이 있는 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지원내용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대상 기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하여 공단에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장관 증서 수여
2.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2(숙련기술장려 활동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

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2. 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3. 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4.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능한국인
5.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6.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 활동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평가대상 기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 활동 평가 대상자 중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제5항제2호 중 “취소”를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3조제2호 중 “정보체계”를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취소를”을 “취소 또는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업무”를 “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 등 숙련기술전수자 등에 관한”로 하고, 같은 조에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제17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 등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업무

28. 제20조의2에 따른 숙련기술장려 활동 평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 등 숙련기술장려 활동 평가 업무

제34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무”를 “사무 및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취소에 관한 사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능한국인의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사무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 시행령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3항의 대한민국명장 취소 및 계속종사장려금 지급 중단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 위반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 ② (생략)	제13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법 제12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대한민국명장 선정 취소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중단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대한민국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결정일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일시장려금 및 계속종사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 ----- ----- ----- ----- -.
④ (생략)	⑤ (현행 제④항과 같음)
<u><신설></u>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

제15조(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생략) <신설> <신설>	<u>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속종사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u> 제15조(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술전수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신청의 내용 및 절차, 선정기준, 선정인원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신설> <신설>	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중 하나를 졸업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자 3. 기타 숙련기술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 공헌 실적이 있는 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및 지원내용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선정대상 기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	-------------------------------------	---

<신 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을 위하여 공단에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기능한국인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장관 증서 수여 2.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20조의2(숙련기술장려 활동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2. 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 3. 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 전수자 4.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능한국인 5.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6.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 활동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평가대상 기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숙련기술장려 활동 평가 대상자 중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④ (생략)	제21조(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한 민국명장의 선정 <u>취소</u>	2. ----- ----- <u>취소 또는</u> <u>계속중사장려금 지급 중단에 관</u> <u>한 사항</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⑥ ~ ⑪ (생 략)	⑥ ~ ⑪ (현행과 같음)
제33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이사 장에게 위탁한다.	제33조(업무의 위탁) (현행과 같 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8조에 따른 <u>정보체계의</u> 구축·운영	2. ----- <u>숙련기술자</u> <u>등 정보관리체계의</u>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u>취소</u> 를 위한 사 실관계 조사·확인 및 청문 업무	6. ----- ----- <u>취소 또는 계속중</u> <u>사장려금 지급 중단을</u> ----- -----
7.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 및 숙련기 술대상자 선정 <u>업무</u>	7. ----- ----- ----- <u>에 필요한 사항의</u> <u>공고 등 숙련기술전수자 등에</u> <u>관한 업무</u>

8. ~ 26. (생 략)	8. ~ 26. (현행과 같음)
<u><신 설></u>	27. 제17조의2에 따른 이달의 <u>기능한국인 선정에 필요한 사</u> <u>항의 공고 등 이달의 기능한국</u> <u>인 선정업무</u>
<u><신 설></u>	28. 제20조의2에 따른 숙련기술 <u>장려 활동 평가 방법 및 절차</u> <u>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 등 숙</u> <u>련기술장려 활동 평가 업무</u>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 장의 선정 및 우대에 관한 <u>사무</u>	2. ----- ----- <u>사무</u> 및 법 제12조에 따른 대한민국 <u>명장 취소에 관한 사무</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법 13조의2에 따른 기능한국 <u>인의 선정 및 우대에 관한 사</u> <u>무</u>
4. 법 제14조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에 관한 사무	5. ----- ----- -----

5. 법 제20조에 따른 국내기능
경기대회에 관한 사무

<신 설>

6. -----

제3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법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
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주민등록 등에 관
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
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
용료 등을 면제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연 락 처	(044) 202 - 7299